

창원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1나5186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1나51864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19가단121998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훈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진욱

변론종결 2021. 11. 11.

판결선고 2021. 12. 9.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19가단12199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 2 토지 지상 비닐하우스 4개동에 관하여 2019. 4.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비닐하우스 4개동을 인도하라.

이 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4면 8, 9행의 ”큰 차이가 없으며“를 ”큰 차이가 없고, 온라인에 게시된 최초 매매가 1억 7,500만 원 또는 전화 연락 당시 최초 C 측에서 제시한 금액인 1억 4,000만 원이 실제 매매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금액이라거나, 피고가 C에게 잔금 예정일보다 약 1개월 일찍 잔금을 지급한 사정이 통상적인 매매대금 결정 및 지급 방식에서 벗어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4면 10행의 ”사정“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사정(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 매매대금 중 7,168,236원을 C에 대한 비닐대금 채권자에게 직접 송금함으로써, 1,365,000원을 C의 미납 공과금을 대납함으로써, 각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나, 위와 같은 비닐대금과 미납 공과금의 합계액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 매매대금 중 10%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서 위와 같은 C의 미지급 채무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만으로 C의 채무 초과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서경원, 판사 진민희, 판사 김민정

별지